

所得要因別 不平等度 分解

— 都市勤勞家口所得을 中心으로 —

尹 起 重

본고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분배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1963년부터 1993년까지의 도시근로가구의 소득통계를 기초로 하여 우선 소득 항목별로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모형을 추정한 다음 각 계수에 의해서 가구소득의 각 항목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변동형태에 따라 다시 3개 국면으로 구분하여 각 국면별로 국민소득 불평등도의 변동요인을 기능적 분배효과와 각 요소 지니효과에 의해서 규명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쿠즈넛츠효과가 찾아지지 않았다.

I. 서 론

1962년부터 1993년까지 32년간 1인당 GNP는 연평균 15%씩 그리고 수출은 27%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자본재고는 1961년에서 1990년까지 29년간에 연평균 11%씩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은 경이적인 고도성장의 성취는 창의적인 기업인과 근면한 근로자의 땀의 결실이라 할 수도 있다. 또 정부에 의한 목표성장률과 정책사업의 설정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감면, 금융지원 인기품목의 연계수입권 부여 등과 같은 지원정책, 그리고 유신정부의 강권에 의한 저임금 정책 등은 수출산업에 대하여 이윤보장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고도성장달성만을 위한 기업의 이윤 보장적 산업정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즉, 그 중 하나는 수출산업에 집중된 나머지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본 논문은 1989년 아산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6 尹 起 重

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된 것이며, 둘째는 신속한 해외기술에 의해서 고도성장이 성취된 탓으로 산업기술개발이 늦어지게 된 점, 셋째는 정책사업에 집중투자한 까닭에 산업구조가 왜곡된 점을 들 수 있으며, 넷째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유와 분배의 불평등 심화현상을 들 수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성취시켜 오던 여러 개발도상국가들도 위에 열거한 경제적인 문제외에 사회 및 정치·경제적인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는 거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물가등귀로 가계의 소비를 압박하는 문제, 제조업 발전의 파생효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상태까지 이르게 된 대기오염, 수질, 토질오염 등의 공해문제, 도시의 인구집중, 교통과 주택문제, 또 성장과정에서 파생되는 소유와 소득분배 불평등의 심화문제 등 개발도상국에서 당면한 문제들은 정제된 농경사회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와 같은 물질적 문제외에 사람들의 가치의 변화는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소유와 분배의 불평등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체제가 확대, 발전하면서 자본과 노동계층의 분화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확대 발전하던 19세기 유럽에서 경험하듯 자생적인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공상적인 이상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사회혼란을 초래케 한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역기능이 부상되면서 전통적인 성장 최우선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불평등도 간의 관계를 분석 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분배상태의 개선책에 주력하려 한다. 성장과 불평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립된 견해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고도성장은 필연적으로 소득분배의 악화가 수반하게 된다는 아더 루이스(D. Arthur Lewis)의 주장이 있다. 즉, 고도성장과 분배의 형평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도성장과정에서의 분배상태의 악화를 애들맨과 모리스(I. Adelman and C. I. Morris)는 저소득계층의 절대빈곤화라고 주장하면서 아더 루이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쿠즈넛츠(Simon Kuznets)는 두 차례의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초기에는 분배상태가 악화되나 일정단계를 지나면 분배상태는 개선되어 간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저소득계층의 빈곤화 현상은 인정하나 애들맨과 모리스의 주장의 절대 빈곤화가 아니고 상대적 빈곤일 뿐이라고 한다. 후일 아후와리아(M. S. Ahlwallia)는 개발도상국 40개국, 선진국 14개국, 그리고 사회주의국가 6개국, 모두 60개국의 횡단자료에 의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해서 애들맨과 모리스가 제기한 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저소득계층의 절대빈곤화가설을 배경하고 쿠즈넛츠의 상대적 빈곤화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장과 불평등도 간의 관계를 역U자형가설이라 하여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설의 검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악화되건 또는 개선되건 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불평등도의 변화가 고도성장의 필연적 결과라는 명제에 주목하고 불평등의 변화를 성장 이외의 여러 요소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있다. 즉, 불평등도의 변화를 아더 루이스와 쿠즈넛츠와 같이 성장과의 형태학적 분석 외에 인적자본의 축적상태, 세제, 사회제도 등 여러 요소와 관련시켜 분석하고 또 불평등도를 소득 요소별, 인구구성 요소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해하고 전사회의 불평등도와의 관계, 요소별 구성비 변동과의 관계, 그리고 요소별 구성비의 변동요인을 규명하여, 불평등도 변동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것이 최근의 연구동향이다.

본고는 한국의 도시가계소득을 대상으로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소득의 분배상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고 이러한 변화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 한다. 불평등도의 변화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소득요소별로 분해하고, 요소별 불평등도의 추이와 소득요소별 구성비의 변화추이도 아울러 검토하게 된다.

II. 자료와 이론모형

여기에 이용될 자료는 통계청에서 1963년 이후에 도시가계조사에서 얻어진 것이다. 도시가계조사의 목적은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민 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②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자료, ③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 입안자료, ④ 국민소득 추계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조사의 범위는 전국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나 이 가운데 농가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그리고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층화 3단 표본추출법에 따라 얻어진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표본크기는 연도에 따라 모집단 크기의 변동과 표본추출의 기술에 따라 다소 변동된다. 즉, 1963년의 경우는 전국의 행정구역상의 시는 모두 32개이었으나(제주시와 속초시를 제외한 30개 시만 대상)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현재는 62개 시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표본의 추출률도 1963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고 또 조사가구수도 증가하고 있다. 즉, 1963년의 표본가구수는 1,702이었으나 1993년의 그것은 4,999가구이며 이 가운데 근로자가구는 1963년의 경우 955가구로 전 표본가구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3년의 경우는 3,169가구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초기에는

8 尹 起 重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했으나 1975년도부터는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① 가구원의 거주에 관한 사항, ② 가구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집세에 관한 사항, ④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이다. 이 가운데 본고와 분석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네 번째의 가구의 수입에 관한 것이다. 이 수입은 소득과 소득 이외의 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소득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또 이 기타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임대료, 그리고 자가평가액, 구제적 보조로 받은 현금, 집에서 생산한 물품, 부업소득 등 이 밖의 근로 이외의 일체의 경상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도시가계연보」에는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은 다시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사회보장수혜(이것은 1982년부터 신설), 수중 및 보조, 그리고 기타로 분류,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자료는 '근로자가구'에 대해서 조사되며 자료는 소득 계층별로 집계, 분기별 연도별로 월평균치를 공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소득을 다음의 식 (8)과 (9)에 의해서 가구소득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게 된다. 즉, 위에서 열거한 7개항(1963년부터 1981년까지는 6개항으로, 그리고 1982년 이후는 7개항으로 분류)의 가구소득을 3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이용하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m 개 계층 전가구의 총소득 Y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Y = (y_1, y_2, \dots, y_j, y_m) = \sum_{i=1}^K H^i \quad (1)$$

$$H^i = (H_1^i, H_2^i, \dots, H_j^i, \dots, H_m^i), \quad H_j^i \geq 0 \quad (2)$$

위에서 y_j 는 j 계층의 평균 가구소득이며 H_j^i 는 j 계층의 i 요소의 평균 가구소득을 가리킨다. 또 다음에서 보는 n_j 는 j 계층의 가구수(도수)를 가리킨다. 이것을 상대도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y_j) = \frac{n_j}{n}, \quad n = \sum_{j=1}^m n_j \quad (3)$$

그리고 가계의 총소득의 지니계수 G_v 는 위 자료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_v = \sum_{j=1}^m \sum_{q=1}^m \frac{|y_j - y_q| f(y_j) f(y_q)}{2\mu}, \quad \mu = \sum_{j=1}^m \frac{y_j n_j}{n} \quad (4)$$

그리고 i 요소소득에 대한 불평등도의 지니계수는 위에서와 같이 다음에 의해서 계산된다.

$$G_i = \sum_{j=1}^m \sum_{q=1}^m \frac{|H_j^i - H_q^i| f(y_j) f(y_q)}{2H_i^i} \quad (5)$$

$$H_i^i = \sum_{j=1}^m \frac{H_j^i n_j}{n}$$

소득요소별 지니계수와 가계소득의 지니계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G_y = \sum_{i=1}^k \theta_i G_i + E \quad (6)$$

$$\hat{G}_y = \sum_{i=0}^k \theta_i G_i \quad (7)$$

$$\theta_i = \frac{H_i^i}{Y_i}, \quad H_i^i = \sum_{j=1}^m H_j^i f(y_j), \quad Y_i = \sum_{j=1}^m y_j f(y_j)$$

j 가구의 가계소득 Y_j 와 j 가구의 i 요소소득 H_j^i 의 관계는 위와 같은데 이들 두 변수는 각 요소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다음의 선형모형 추정에도 이용될 것이다. 즉, 가정한 선형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H_j^i = a_i + b_i y_j + \epsilon_j \quad (8)$$

$$\sum_{i=1}^k a_i = 0, \quad \sum_{i=1}^k b_i = 1.0$$

위의 선형식을 연도별로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하고 절편과 회귀계수의 부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

$$\begin{aligned} a_i \geq 0 \text{이고 또 } b_i \geq 0 \text{이면 제1유형 소득} \\ a_i \leq 0 \text{이고 또 } b_i \geq 0 \text{이면 제2유형 소득} \\ a_i \geq 0 \text{이고 또 } b_i \leq 0 \text{이면 제3유형 소득} \end{aligned} \quad (9)$$

제1유형은 가구소득에서 요소소득의 절편과 회귀계수가 다 같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그것은 가구소득 증가와 더불어 요소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임금과 같은 근로소득을 뜻한다. 즉, 가계소득이 0일 때도 요소소득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그것은 가구소득과 거의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2유형의 소득은 절편이 음의 값을 갖고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 즉, 가계소득증가에 따라 요소소득이 고소득층에서만 증가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재산소득이 해당된다. 제3유형은 절편이 양의 값을 갖고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계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요소소득이 증가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요소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이므로 저소득층에서 가구소득과는 역의 관계를 갖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적인 이전소득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위와 같은 기본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즉, 첫째는 성장과 불평등도 간의 관계를 알고자 식 (4)에 의해서 추정된 가구소득분포의 불평등도 지니계수 G ,의 변동을 검토하고 쿠즈넛츠효과여부를 음미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정에서 소득분배상태지표인 지니계수 G ,가 역U자로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변동은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지대와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앞지르기 때문에 분배상태가 악화되나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근로계층의 소득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동시에 재산형성도 가능해지므로 분배상태는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분배상태의 악화와 개선의 연속현상을 가리켜 쿠즈넛츠효과라 한다. 둘째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구소득의 각 구성항목별로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하는 식 (8)의 선형모형을 추정하고 연도별 소득항목별 계수의 부호를 검토하고 가구소득의 성격을 구분한다. 다음은 이들을 유형별로 묶어 근로소득, 재산소득, 부업 및 사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분할하고 이들 요소소득에 대한 식 (8)의 선형모형을 추정하고 이들 계수에 의해서 이들 요소소득의 성격을 특징 지운다. 셋째는 가구소득의 분배상태인 불평등도 G ,가 어떤 소득의 분배율 변화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가를 분석한다. 이것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써 이를 기능적 분배효과분석이라 한다. 예로써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가 일정기간에 10% 개선되었다면 이를 선도한 소득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만약에 i 요소의 분배율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장 크게 증가했다면 그 i 요소의 분배율 증가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하며 G ,의 감소는 i 요소의 기능적 분배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넷째는 요소소득의 불평등도 $G(i=1, 2, 3, \dots, k)$ 의 변화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 간의 변화관계에 의해서 요소 지니효과를 음미하게 된다. 이것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증가(분배상태의 악화)나 감소(분배상태의 개선)가 어떤 요소소득의 지니계수 영향을 받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로써 일정기간에 G ,가 5% 감소했을 때 다른 어떤 소득보다 i 요소의 지니계수 G ,가 15%감소로써 가장 크게 감소하여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개선을 선도했다면 이를 가리켜 i 요소 지니계수효과라고 한다. 기능적 분배효과와 요소 지니효과가 겹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쪽을 선택 설명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에 의해서 한국경제성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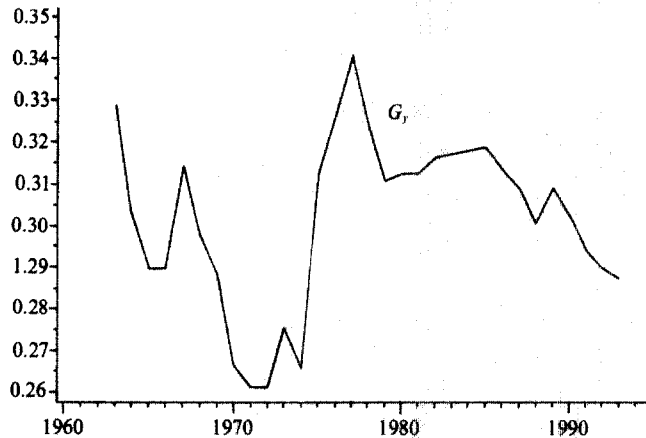
III. 실증분석 결과

쿠즈넛츠효과 음미 : 1963년 이후 1993년까지의 기간은 지니계수의 변동 형태로 보아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즉, 첫 국면은 1963년부터 1973년까지이고, 둘째 국면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셋째 국면이 1981년 이후 1993년까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의 구분은 단순한 형태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한국경제의 성장 경로상의 특징에 의한 것이다. 제1국면과 제2국면의 경계인 1973년과 1974년은 유신헌법 공포에 따른 불안정기와 석유파동의 소용돌이가 안정되는 때이기도 하다. 즉, 제1국면은 외자도입과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순조롭게 성장하던 기간이고 제2국면은 고유가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제3공화국 말기의 10·26 사태 이후의 혼란과 제5공화국의 출범이라는 과도기적 기간까지를 제2국면으로 그리고 정치적 안정기라 할 수 있는 1981년 이후를 제3국면으로 구획했다. 이 기간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안정에서 개선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첫 국면은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국면인데 이 기간이 한국경제의 도약기라 할 수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자와 외자를 파격적인 방법으로 조달하여 GNP의 성장률을 높이는데 주력했고 수출산업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때이다. 즉, 자동차 산업이나 시멘트 산업과 같은 수입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1962년의 한해 외자도입액이 1억 6,700만 달러나 된다. 1965년도에는 단일변동환율제의 도입,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한·일 무역협정 체결, 9월에는 역금리제에 의한 금리현실화를, 또 만성적인 적자재정의 해소와 개발재정의 도입을 위해 세계개혁도 단행했다. 경제외적인 대외문제로서 1965년도의 소규모 비전투요원의 월남파병에 이어 1966년도의 중파를 위한 한·미 양국간의 각서서명은 후일 한국경제 도약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 결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2~1966)의 연평균 총투자율은 16.6%이며 제2차 계획기간(1967~1971)에는 26.3%나 된다. 연평균 GNP성장률은 제1차 계획기간에는 7.7%이었으나 제2차 계획기간에는 10.5%나 된다. 이 기간에 수출구조도 크게 변했다. 즉, 1961년도의 수출에서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8.6%, 그리고 공산품이 27.7%이었으나 1971년의 그것은 농산품이 4.4%인데 비해 공산품은 88.9%나 된다.

이러한 공업화와 수출주도형의 산업정책은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GNP의 성장률을 높여 도시 빈곤층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직업을 얻어 도시에 진출하는 신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 도시가구의 불평등도를 현저하게 개선시켰다. 경제가 확장되고 도시화, 공업화, 그리고 상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림 1〉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변동(1963~1993)



서는 도시 근로 가계소득의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불평등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이 가장 낮은 연도이며 1972년, 1973년, 1974년은 다소의 변동은 있으나 불평등도가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때가 한국경제로서는 한 전환기라 할 수 있는 제2국면을 맞는 때이다. 즉, 1971년은 2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된 해이기도 하다. 또,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과 상업차관에 의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수입 대체산업과 수출용 경공업은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이 과도하여 생겨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해이기도 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3선 개헌의 파장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공업화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의 혼란으로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또 한편에서는 중동의 전운으로 석유가격이 폭등하여 모든 국제 원자재가격이 동시에 등귀할 때 이었다. 국내의 도매물가지수도 두 차례의 유희파동으로 현저하게 상승했다. 즉, 1972년

〈표 1〉 1970년대 초 물가와 경제성장률

연 도	WPI동귀율	CPI동귀율	경제성장률
1971	8.6	12.3	9.2
1972	14.0	10.6	7.0
1973	6.9	3.0	16.5
1974	44.6	24.3	8.6
1975	19.6	25.3	8.3
1976	9.4	8.7	15.3

주: 〈부표 5〉 참조.

의 전국 도매물가지수의 등귀율은 14%나 되었고 1974년과 1975년의 그것은 44.6%와 19.6%나 된다. 물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물가상승의 또 다른 원인의 하나는 1973년 1월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선언'에 의한 야심적인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를 압박하는 한편 경기가 침체되기도 했다. 물가등귀의 선행요인들의 작용 때문인지 분명치 않으나 1974년 이후 1977년까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는 극도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월남전 종식 이후 무역의 수지가 악화(1975년 무역의 수지 적자)되는 듯 했으나 중동지역의 건설 분야 진출로 무역의 수지가 급격히 개선되는 동시에 1977년에 100억 달러 수출목표도 달성되고 또 중화학 제품의 수출도 착실하게 성장하여 1970년에 그의 수출구성비가 15%이었으나 1979년에는 43%나 되었다. 해의 건설 산업의 호황과 중화학 공업의 착실한 성장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도 1977년을 절정으로 1980년대를 향해 급격히 개선되는 경향이었다. 즉,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인 지니계수 G ,는 1974년에 .260이었으나 1977년에 .341을 절정으로 개선되어 1979년에는 .311, 1980년과 1981년에는 .312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유희파동 이후 1980년까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변동 양상은 역U자형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한 국면을 역U자형이라 할 수는 없다. 그 첫째 이유는 그 기간이 경제개발의 초기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며, 둘째 이유는 그 기간에 유희파동에 의한 불황기와 중동의 건설산업 진출과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편중의 호황기가 연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불황과 호황의 연속이 역U자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개발을 착수해서 성장의 궤도에 진입한 기간, 즉 1963년에서 1977년까지를 한 국면으로 보면 역U자형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제3국면에서는 불평등도가 안정화되는 경향이다. 1970년대 말부터 내외 경제의 여건은 명암을 엇갈리게 한다. 대내적으로 1978년에는 중동의 호황으로 국내경기가 과열되기 시작, 그 경기의 과열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켜 소위 거품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9년 4월에는 안정화를 위한 총수요억제책을 마련했으나 외부 경제여건의 급변으로 무위로 그쳤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외채누적, 1979년 7월의 2차 석유파동 그리고 이어지는 10·26사태로 안정화는 달성하지 못한 채 1980년을 맞게 된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는 1978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다소의 부침은 있으나 1990년대를 향하여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 하나는 1973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인한 고용확장과 중동건설 경기로 인한 거품경제로 노동공급의 한계에 이른 점을 들 수 있다. 노동공급의 한계점부터는 경기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으나 도시의 근로가구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증가하

는 동시에 그의 분산은 적어지게 마련이다.

제3국면에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의 개선과 안정의 또 다른 원인은 정부의 효과적인 안정화 정책과 3저라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정의 유산을 이어받은 제5공화국은 선진국 경제의 기반구축과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운영의 안정화 방안으로 세 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시행했다. 그것은 안정화, 자율화, 그리고 개방화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즉, 그 첫째가 물가안정으로서 연간 물가등귀율을 5%로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내 저축률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며, 셋째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넷째는 그 동안의 정부주도경제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복귀,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공정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다섯째가 과거의 경제개발에 의한 성장위주에서 사회개발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시행의 결과 1982년의 국내 저축률은 20%이었으나 1986년에 그것은 32%로 높아졌고, 물가는 1980년의 경우 전국 도매물가지수의 등귀율이 41%, 1981년도에는 10.3%이었으나 1986년에는 1.4%나 하락했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42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또 1980년 농업의 총작과 1970년대의 불안의 유산으로 GNP는 3.7%나 하락했으나 1986년부터 3년간은 매년 12%씩 성장했다. 이러한 호황은 효과적인 안정화정책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국제금리의 인하, 대원화 불화환율의 하락,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3저현상의 여진변화에도 힘입었다 하겠다.

이상에서 1963년부터 1993년까지의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변화를 단순한 형태만으로 3개국면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특징과 변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즉, 첫 국면(1963~1973)은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공업화 투자에 의해서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이라 도시의 실업이 해소되는 동시에 새로운 근로계층이 유입되어 도시근로가구소득의 불평등도는 현저하게 개선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면(1974~1980)은 유류파동과 중화학공업 육성책, 그리고 중동의 전선호황으로 불평등도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급격히 악화되나, 1978년부터 역전하여 현저하게 개선되는 역U자형을 보이지만 이것을 단순한 형태만으로 쿠즈넛츠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3국면은 여러 경제적 여건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아 노동공급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의 반증은 물가등귀에 비하여 임금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율로 상승한 것으로 대변된다. 즉, 1981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물가지수는 19.3%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비하여 임금은 62.2%나 상승했고 1987년에서 1992년까지 5년간은 물가가 44.5%가 등귀한 데 대하여 임금은 114.4%나 증가했다.

〈표 2〉 임금과 물가동귀의 비교

연도	평균임금(원)	증가율(%)	전도시CPI	증가율(%)
1981	180,837	100.0	86.2	100.0
1986	293,633	162.2	102.8	119.3
1987	322,446	100.0	81.4	100.0
1992	691,637	214.4	117.6	144.5

자료: 통계청, 물가연보, 1988년도, 36면.

_____, 한국통계연감, 1993년도, 98면(임금)과 422면.

주 : 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서 1981년도와 1986년도의 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한 지수이며 1987년과 1992년도의 지수는 1990년을 100으로 한 지수이다.

가구소득의 유형분류: 도시 근로가구 소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3년부터 1981년까지는 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들을 묶어서 근로소득과 이의 5개 항목을 묶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사회보장 수혜 항목이 추가되어 7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또 대분류에서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공표하고 있다.

가구소득(1963~1981)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수입, 부업수입,
수증 및 보조, 기타

가구소득(1982~)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사회보장수혜,
수증 및 보조,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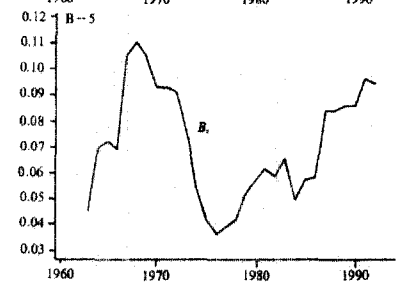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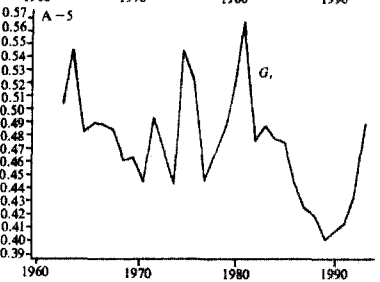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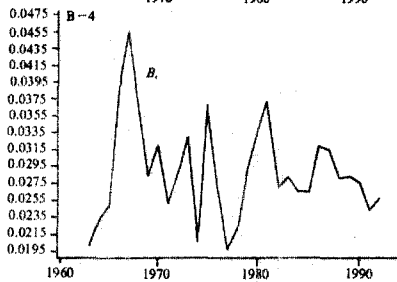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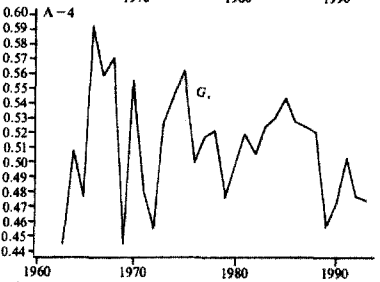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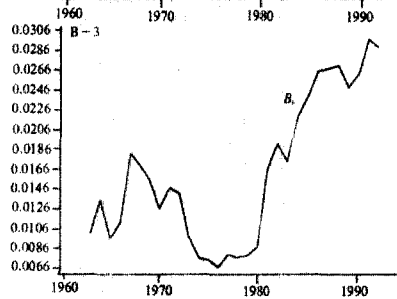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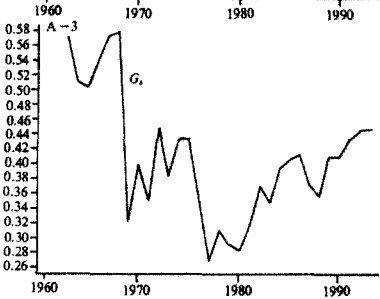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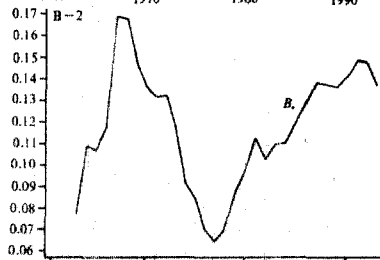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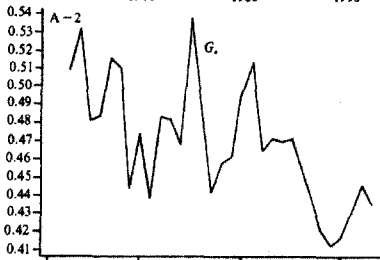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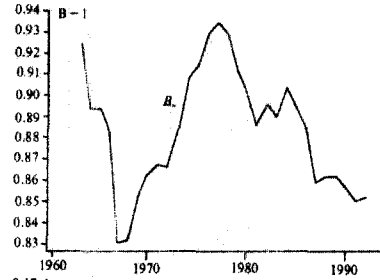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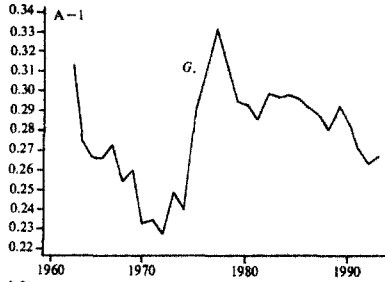
앞의 분류에 의해서 식 (8)을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 <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은 예상과 같이 제1유형의 소득으로 분류되나 대분류인 기타소득은 절편이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회귀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갖고 있어 식 (9)에 의해 제2유형의 소득으로서 재산소득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절편의 합계는 모두 0이 되고 또 회귀계수의 합계는 모두 1.0이 되어 식 (8)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 기타소득을 위에서의 같이 5개 종류로 나누어 연도별로 식 (8)을 추정했을 때에도 식 (8) 하단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기타소득을 5개 요소 소득으로 나누어 식 (8)을 추정하면 이들 5개 요소 소득의 절편의 합계는 기타소득의 절편과 같아야 하며 회귀계수의 합계도 기타소득의 회귀계수와 일치해야 한다. <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 5개 요소 소득의 계수부호는 몇 개의 절편을 제외하면 음의 값을 가지며 회귀계수 또한 모두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즉 임대료의 절편이 1963년, 1970년에서 1972년까지 3년간 그리고

사업과 부업소득의 절편이 1976년부터 1981년까지 6개년만이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이들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으로 제1유형의 요소이다.

1982년 이후 소득의 대분류에서도 근로소득은 제1유형의 요소에 속하며 사업과 부업소득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982년부터 1984년까지 3개년간은 제1유형의 소득이며, 1985년도 이후는 제2유형의 소득에 속한다. 또 기타소득은 1982년도 이후 모든 연도의 절편의 부호가 음이고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점으로 미루어 제2유형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사업 및 부업소득의 경우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보아 제1유형과 제2유형소득의 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사회보장수혜, 수증 및 보조, 그리고 기타소득 각각에 대하여 연도별로 위 식 (8)을 추정한 것도 앞에서와 같이 모두 제2유형의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모든 항목의 소득은 제1유형과 제2유형만으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7개 항목의 소득을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식 (8)을 적용,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식 (9)에 의거 가구소득의 요소별 특징을 분석해 본다. <부표 4>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은 <부표 3>에서의 그것들과 같다.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특징화 하기 위해서 분류한 것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즉, 이들 네 가지 소득의 합계가 가구소득이므로 불가피하게 여기에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재산소득은 <부표 3>에서의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의 합계이며, 이전소득은 <부표 3>에서의 수증 및 보조, 기타소득, 그리고 1983년 이후의 사회보장금 수혜를 합제한 것이다. <부표 4>에서의 재산소득 H_2^2 는 <부표 3>에서와는 달리 모든 연도의 절편이 다 같이 음의 값을 갖고 회귀계수도 다 같이 양의 값을 가져 제2유형의 재산소득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부표 4>에서의 이전소득 H_1^4 는 <부표 3>에서의 수증 및 보조, 기타소득,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금 항목의 소득에서 보듯 모든 연도(1963~1993)의 절편은 모두 음의 값을, 그리고 회귀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가져 제2유형의 재산소득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전소득은 제3유형의 소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재산소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한국 도시근로 가구소득의 특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부족분을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소득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이 보다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부표 4>에서 이전소득의 회귀계수가 재산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의 그것들보다 큰 점이다. 1963년부터 1993년까지 근로소득을 제외한 H_2^2 , H_2^3 , H_1^4 의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전소득인 H_1^4 의 그것이 모든 연도에서 가장 크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다 같이 재산소득의 성격을 가지며,

〈그림 2〉 요소별 지니계수와 요소별 분배율



이 가운데 H_1^4 의 계수가 가장 크다는 것은 본래의 이전소득의 의미를 상실하고 재산소득의 성격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림 2> B-5의 이전소득구성비 θ_1 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된다. θ_1 가 사업 및 부업소득구성비 θ_0 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호경기에는 이전소득이 많아지고 불경기면 적어지는 경향이다. 재산소득의 성격을 갖고 또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지하경제에서 유입되는 위장된 이전소득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능적 분배효과: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부터 1993년까지 31년간 평균적으로 88%나 된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의 구성비가 크므로 이 구성비의 변화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양자의 변화를 대비해 본다. <그림 1>의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와 <그림 2>의 근로소득의 분배율 변화(B-1)는 거의 같은 변화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 분배율의 최저 시점인 1967년과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최저시점인 1971년과의 시차만이 인정될 뿐이다. 양자의 변화양상의 특징은 소득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지면 근로가구의 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반면 그 분배율이 낮아지면 분배 상태는 개선되는 경향이다. 이상과 같은 양자간의 역의 관계에 근거하여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와 근로소득과 표리관계에 있는 기타소득의 분배율 θ_0 를 대비해 보면 양자간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와 기타소득의 분배율 θ_0 의 변화상태를 앞서서와 같이 3개 국면으로 기간별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면별 기타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불평등도

기 간	기타소득분배율	가구소득불평등도
1963~1973	.129	.288
1974~1980	.080	.312
1981~1993	.129	.307
전기간 평균	.129	.3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 평균으로 보나 또 전 기간 평균으로 보나 기타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지면 분배상태는 개선되고 반면 그 분배율이 적어지면 분배상태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으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와 기타소득의 분배율 간에 역의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는 재산소득의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았다.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소득의 분배율을 찾아 기능적 분배효과를 규명하기로 한다. 가구소득의 분배상태 G 가 적어지는 경우에 어떤

요소의 분배율 θ_i 가 높아지고 또 G_i 가 커질 때 어떤 요소의 분배율이 적어지는가를 찾는 것이다. 즉, 가구소득의 분배상태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림 1>의 G_i 의 변화와 <그림 2>의 B-3에서 B-5까지의 분배율 변화를 대비,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 본다. 먼저 제1국면에서 가구소득의 분배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원인을 찾아 본다. 가구소득의 분배상태 개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이전소득의 분배율 변화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부터 1973년까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_i 는 .329에서 .276으로 16%가 개선된데 대하여 이전소득의 분배율은 .030에서 .076으로 153%나 향상되었다. 제2국면에서 G_i 는 1974년에 .260에서 1977년에 .341이었다가 1980년에 .312로 역U자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상태가 가장 악화되었을 때이기도 하다. 여러 분배율 가운데 제2국면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요소가 사업 및 부업소득이다. 이 분배율은 이 기간에만 .07에서 .09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G_i 의 변동이 이 기간에 역U자형으로 변한 것과 같이 분배율도 그와 같이 변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재산소득으로써 분배율이 1974년에서 1977년 사이에 37%나 감소했다가 1977년에서 1980년 사이에 74%나 증가했다.

<표 4>에서 보듯 세 요소 중 분배율이 U자형으로 변한 것은 재산소득뿐이다. 제3국면에서는 G_i 가 8%개선된데 대하여 사업 및 부업소득의 분배율이 87%나 증가했다. 그리고 이전소득의 그것은 54%나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사업 및 부업소득의 구성비는 너무 적어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별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으며 반

<표 4> 요소별 기능적 분배상태

국 면	연 도	G_i	θ_1	θ_2	θ_3
1	1963	.329	.027	.020	.030
	1973	.276	.009	.033	.076
	11년간	16% 개선	67% 감소	65% 증가	153% 증가
2	1974	.265	.008	.030	.050
	1977	.341	.008	.019	.038
	3년간	29% 악화	불 변	37% 감소	30% 감소
	1977	.341	.008	.019	.038
	1980	.312	.009	.033	.056
	3년간	9% 개선	불 변	74% 증가	47% 증가
3	1981	.312	.016	.037	.061
	1993	.287	.030	.023	.094
	13년간	8% 개선	87% 증가	38% 감소	54% 증가

면 이전소득의 경우는 구성비는 크지만 변화율이 보다 적어 원인의 규명은 유보하고 요소 지니효과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제1국면에서는 이전소득의 분배효과가 그리고 제2국면에서는 재산소득의 분배효과가 가구소득의 분배상태를 변동시킨 것 같다. 제1국면에서 이전소득의 기능적 분배효과는 아마도 농촌에서 도시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식량지원등의 비제도적 이전소득이 도시빈곤을 구조하는 동시에 도시 근로가구의 소득불평등도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 것 같다. 또 제2국면에서의 재산소득의 기능적 분배효과는 경제개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내자 조달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68년의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과 1972년의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 공포하는 동시에 1974년에는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의 설립, 그리고 1977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설치 등으로 도시 근로가구가 증권시장에 대거 참여하게 된 시기가 제2국면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1976년에서 1977년 사이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 시가총액기준으로 63.7%나 증가하여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기도 했을 때이다. 그 후 도시 근로가구의 재산소득은 착실하게 증가하여 도시 근로가구의 소득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니효과: 여기서는 각 요소별 지니계수의 변동이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각 요소별 지니계수의 크기를 이론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G_0 \leq G_1 \leq G_2$$

위의 관계에서 G_0 는 기타소득(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의 불평등도 지표 지니계수를 가리킨다.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이 포함되므로 불평등도는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도에서 근로소득의 그것이 가장 적고 그리고 기타소득이 그 중에서 보다 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 포함된 각 요소의 소득은 그 절편이 음의 값을 갖고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져 모두가 고소득층에 이들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기타소득이 재산소득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불평등도가 보다 크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변화추이 <그림 1>과 각 요소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추이 <그림 2>의 A-1에서 A-5까지를 대비시켜 본다. 먼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그림 1>)와 근로소득의 불평등도 G_1 ,(<그림 2>의 A-1)의 변화추이를 대비시켜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가구소득 가운데 근로소득 비중이 평균적으로 88%나 되므로 당연한 현상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그림 1>과 <그림 2>의 A-1에서 A-5까지의 변동양상을 검토해 보되 A-1과 A-2는

제외한다. A-1은 위에서 논의한 근로소득의 불평등도 G_y 이고 A-2의 그림은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의 불평등도 G_0 이므로 이것은 G_y 와 표리관계라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된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의 불평등도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된다. 제1국면, 제2국면 그리고 제3국면에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_y 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소득의 지니계수를 찾는 것이다. 즉, 지니계수들 가운데 A-3에서 A-5까지의 그림과 <그림 1>의 G_y 의 변동을 대비시켜 G_y 의 선도요소소득을 찾는 것이다. 우선 그림으로 대비시키는 한편 각 지니계수의 변동도 동시에 검토해 본다. 제1국면과 제2국면에서의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의 변동원인은 기능적 분배효과에서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 아래 표에서의 제1국면과 제2국면은 참고할 뿐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국면에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_y 는 8% 개선된 데 대하여 이를 선도한 것은 이전소득으로서 그 기간에 17%나 개선되었다. 즉, 사업 및 부업소득은 40%나 악화되었고 재산소득은 8%만이 개선되었다. 기능적 분배 효과분석에서도 이전소득에서의 분배율 증가가 54%나 되었었다. 이것으로 제3국면에서의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_y 의 8% 개선의 원인은 이전소득이라는 요소 지니 효과라 할 수 있으며 또 이전소득의 기능적 분배효과가 이를 보완 설명하고 있다. 제3국면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서울의 강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현상이 만연되던 기간인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가구 소비의 고도화가 진행되던 기간이기도 하다. 1980년은 주거비 비율이 20% 수준에서 24%로 그리고 승용차의 보

<표 5> 가구소득불평등도와 각 요소소득불평등도 대비

국 면	연 도	G_y	G_0	G_r	G_i
1	1963	.329	.574	.444	.503
	1973	.276	.382	.526	.469
	11년간	16% 개선	33% 개선	18% 악화	7% 개선
2	1974	.265	.436	.545	.440
	1977	.341	.268	.497	.444
	3년간	29% 악화	39% 개선	5% 개선	불 변
	1977	.341	.286	.517	.444
	1980	.312	.283	.497	.517
3년간	9% 개선	7% 악화	4% 개선	11% 악화	
3	1981	.312	.318	.516	.568
	1993	.287	.447	.474	.487
	13년간	8% 개선	40% 악화	8% 개선	17% 개선

급이 180만 대에서 240만 대로 급등하는 것으로 대변된다. 1980년 이후는 소비의 고도화 풍토에서 부동산 투기에 의하거나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생성된 고소득자와 다수의 정액 근로소득자가 공존하는 사회로 특징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 집단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에서는 비제도적 이전소득의 비대화가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한국경제는 1962년 이후 연속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 기간에 성장과 분배 간의 수량적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1963년 이후의 도시근로 가구소득자료를 이용, 가구소득의 요소별 지니계수의 분해방법을 발전시켜 한국경제의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1962년 이전, 당시의 한국경제는 노동과잉 상태이며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경제구조가 병존하는 이중 구조경제이었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이중 구조경제에서 산업사회로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도시 근로 가구소득자료를 이용,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두 가지 국면의 성장경로의 성질을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한국경제에 대하여 분배와 관련시켜 성장경로의 성질을 규명하는 것은 다른 후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유익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의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쿠즈넛츠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1963년에서 1993년까지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변동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3기로 나누어지는데 그 제1국면은 1963년부터 1973년까지로, 이 기간은 가구소득의 분배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불평등도 G_1 의 개선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1963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에 해당되는데 1차 5개년 기간은 수입 대체산업의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후반부터는 수출산업의 진흥에 역점을 두었던 때이다. 그리고 제2차 5개년계획기간(1967~1971)에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일관할 때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의 잉여인구와 더불어 농촌의 영농인구까지 도시에 집결, 미숙련 노동자로서 도시의 산업사회를 형성하고 이들이 점차 숙련공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1국면에서는 도시의 과잉 인구문제의 해소와 농촌에서 유입된 미숙련 노동자의 숙련화와 도시의 상업화 진행에 따라 도시 근로가구의 분배는 현저하게 개선되어 쿠즈넛츠효과의 필연성은 찾아볼 수 없다.

제2국면(1974~1980)은 노동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가구소득의 분배상태가 개선되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나 현실은 예상과는 달리 G_1 의 변화 양상이 역U자

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적 충격과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투자라는 자원의 재배치 효과에 기인한 것 같다. 즉, 1972년과 1973년 2차에 걸친 유류파동과 유신헌법의 공포, 1973년의 중화학공업 육성의 선언으로 자본집약적인 기술혁신의 진행, 월남전 종식에 따른 불황과 중동 건설경기의 진행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라는 자원의 재배치로 G 의 역U자형이 나타난 것 같다. 제3국면은 기능적 분배효과에 의해서 G 가 개선되는 것 같다. 노동의 부족으로 인한 자본집약적 기술혁신이 제2국면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다 제3국면 초부터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75년 이후 기타소득의 구성비(자본의 분배율)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투자, 즉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근로 가구소득의 각 구성요소의 성격을 특징지우기 위해 각 요소의 소득을 식 (8)에 적용, 각 계수의 부호를 점검한 결과, 근로소득은 모두 식 (9)의 제1유형의 소득이고 나머지 소득은 다소의 예외는 있으나 제2유형의 소득이었다. 이들을 더욱 간결하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양분하여 식 (8)과 식 (9)를 적용해 본 결과도 예외없이 근로소득은 제1유형의 소득으로 또 기타소득은 제2유형의 소득으로 특징지어진다. 또 기타소득을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분할하여 식 (8)과 식 (9)를 적용해 보았으나 이들 3개 요소의 소득도 모두 제2유형의 재산소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구조, 즉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조적 이전적 소득이 발견되지 않고 단순히 근로소득과 재산소득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한국의 도시 근로가구소득 구조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기타소득(재산소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전소득 항목이다. 도시 근로가구 가운데 고소득자는 부모 또는 형제 누군가에 의한 반대급부 없는 소득의 이전과 연금 등의 급여로 재산소득이 형성되는 특징이 엿보인다. 또 이것은 지하경제의 실존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변동은 가구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의 분배율인 근로소득의 구성비와 대비시켜 본 결과 양자는 역의 관계임이 보인다. 즉, 노동분배율이 높으면 근로가구의 분배상태는 악화되고 반면 그 분배율이 적어지면 분배상태는 개선되는 경향이다. 한편, 사업 및 부업소득과 이전소득의 구성비와 근로가구의 불평등도 G 의 변동을 대비해 보면 G 가 높아질 때 두 구성비는 다 같이 작아지고 G 가 감소 개선될 때는 두 구성비가 다 같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 근로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는 노동의 분배율과는 역의 관계이며 이전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의 구성비와는 정의 관계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 근거하여 각 국면별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변동원인을 기능적 분배효과와 요소 지니효과로 나누어 검토해 본 결과, 제1국면에서 가구

소득의 분배개선은, 즉 G 의 감소는 이전소득의 분배율 제고라는 기능적 분배효과에, 제2국면에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G 의 역U자형 변화는 재산소득에 대한 기능적 분배효과에, 그리고 제3국면에서의 G 의 하강(감소)경향은 이전소득 요소의 지니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노동 분배율이라 할 수 있는 근로소득 구성비가 커지면 근로가구의 분배 상태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전소득이나 사업 및 부업소득의 구성비 제고에 의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모두 재산소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전통적인 성장이론과는 대립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쿠즈넛츠(S. Kuznets), 아더 루이스(Athur Lewis), 칼 맑스(Karl Marx) 또는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적 충격요소를 제외하면 점진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분배상태는 개선되고 있다. 위는 도시 근로가구소득에 의해서 추정된 지니계수 외에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역시 1980년도 0.405, 1985년도 0.385, 1988년도가 0.349로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지대와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보다 많은 축적을 하게 되어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수준부터 저소득층의 소득이 착실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고소득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산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소득 불평등도는 점차 개선되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만으로도 그러한 논의는 무시될 수 있다. 부제로서 '도시 근로가구소득을 중심으로'라고 전제하기는 했다. 또 해석에 있어 제한점과 여건을 전제하기는 했으나 도시 근로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자료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를 보편론에 적용, 해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 參 考 文 獻 ◆

1. 尹起重, "成長下에서의 所得不平等의 趨移", 『經濟學研究』, 28집, 1980, pp. 9~24.
2. ———, "所得不平等度の 推定-gamma分布-", 『産業과 經營』, 22권 1호, 1985, pp. 99~112.
3. ———, "對數正規分布를 이용한 不平等度の 推定", 『産業과 經營』, 22권 2호, 1985, pp. 14~30.

4. _____, “韓國國民所得不平等度 推定에 관한 研究”, 『統計學研究』, 6권 1호, 1977, pp. 34~46.
5. _____, “成長과 不平等 ; 文獻調査”, 『産業과 經營』, 23권 1호, 1986, pp. 25~40.
6. _____, “사회후생지표로서의 불평등도 달톤과-엘킨슨 소론을 중심으로”, 『産業과 經營』, 23권 2호, 1986, pp. 21~36.
7. _____, “엔트로피에 의한 불평등도”, 『産業과 經營』, 26권 1호, 1989, pp. 11~24.
8. Adelman, I. and Morris, C. I.,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9. Ahluwallia, M. S.,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No. 3, 1976.
10. Chiswick, B., “Earning Ine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1971.
11. Chenery, H. and Syrquin, M.,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5.
12. Cline, W. R.,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A Survey of Literatur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No. 1, 1975.
13. Fields, G. 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 Press., 1980.
14. Fishlow, A., “Brazilian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15. Gupta, S., “A Model for Income Distribution, Imploymnt and Growth: A case study of Indonesia,” *World Bank Staff Discussion Papers*, No. 24, Johns Hopkins Univ. Press, 1977.
16. Kravis, I. B.,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2, 1960.
17. Kuo, S. W. Y., Ranis, G. and Fei, J. C. H., *The Taiwan Success Story: Rapid Growth with Improved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China, 1952~1979*, Westview Press, Inc., 1981.
18.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1955.
19. _____,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II,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

- nge*, Part II, January, 1963.
20. Lars Osberg, *Economic Inequality and Poverty*, Share, 1991.
 21. Oshima, H. 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iz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si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4, 1962.
 22. Paukert, F., "Income Distribution: A Survey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08, 1973.
 23. Savoie, D. I. and Brecher, *Equity and Efficiency in Economic Development—Essay's in Honour of Benjamin Higgins*, MacGill-Queen's, 1992.
 24. Skolka, J. and Maton, J.,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of Economy and Employment.*, ILO., 1981.
 25. ———, Weisskoff, R.,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Puerto Rico, Argentina, and Mexico,"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16, 1970.
 26. Sen, Amartya, *On Economic Inequality*, Clarendon, 1972.
 27. Slottje, D. T., *Research on Economic Inequality*, Vol. 1, 1989, JAI, 1989.
 28. Winnick, A. T., *Toward Two Societies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The U.S. Since 1960*, Praeger, 1989.

〈부표 1〉 요소별 지니계수

연도	가구소득 G_y	근로소득 G_w	기타소득 G_o	재산소득 G_r	부업소득 G_b	이전소득 G_i
1963	.329	.314	.509	.444	.574	.503
1964	.303	.275	.532	.509	.511	.547
1965	.289	.266	.481	.475	.503	.481
1966	.289	.266	.483	.593	.542	.489
1967	.315	.273	.522	.557	.573	.488
1968	.297	.254	.510	.572	.579	.483
1969	.288	.261	.443	.444	.321	.460
1970	.266	.233	.474	.557	.401	.462
1971	.261	.234	.438	.481	.347	.441
1972	.261	.227	.483	.454	.450	.494
1973	.276	.249	.482	.526	.382	.469
1974	.265	.239	.467	.545	.436	.440
1975	.312	.291	.538	.563	.433	.544
1976	.326	.314	.485	.498	.347	.522
1977	.341	.334	.442	.517	.268	.444
1978	.325	.315	.458	.521	.311	.463
1979	.311	.296	.462	.475	.292	.484
1980	.312	.293	.497	.497	.283	.517
1981	.312	.286	.514	.519	.318	.568
1982	.316	.299	.464	.504	.370	.474
1983	.317	.298	.471	.524	.347	.487
1984	.318	.299	.470	.530	.394	.476
1985	.318	.297	.471	.544	.406	.473
1986	.313	.292	.455	.527	.413	.442
1987	.309	.288	.439	.523	.372	.423
1988	.300	.281	.421	.520	.356	.415
1989	.309	.293	.410	.456	.409	.398
1990	.302	.283	.417	.472	.411	.405
1991	.294	.270	.431	.503	.433	.411
1992	.290	.263	.446	.477	.445	.432
1993	.287	.267	.434	.474	.447	.487

주: 1.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

2. 기타소득은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의 합계.

〈부표 2〉 소득요소별구성비

연도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가구소득
변수	H_a^1	H_a^2	H_a^3	H_a^4	Y_a
	θ_1	θ_2	θ_3	θ_4	
1963	5,540	120	160	270	6,000
p	0.923	0.020	0.027	0.030	1.00
1964	6,540	170	120	510	7,340
p	0.891	0.023	0.016	0.070	1.00
1965	7,550	210	80	610	8,450
p	0.893	0.025	0.009	0.073	1.00
1966	10,370	440	130	810	11,750
p	0.883	0.037	0.011	0.069	1.00
1967	15,110	830	330	1,910	18,180
p	0.831	0.046	0.018	0.105	1.00
1968	17,700	790	360	2,430	21,270
p	0.832	0.037	0.017	0.114	1.00
1969	21,000	690	380	2,580	24,650
p	0.852	0.028	0.015	0.105	1.00
1970	24,320	900	350	2,610	28,180
p	0.863	0.032	0.013	0.092	1.00
1971	28,940	830	490	3,080	33,346
p	0.868	0.025	0.015	0.092	1.00
1972	33,010	1,080	540	3,450	38,080
p	0.867	0.028	0.014	0.094	1.00
1973	35,610	1,330	390	3,050	40,380
p	0.882	0.033	0.009	0.076	1.00
1974	43,400	1,430	360	2,590	47,780
p	0.908	0.030	0.008	0.054	1.00
1975	59,940	2,410	480	2,710	65,540
p	0.915	0.037	0.007	0.041	1.00
1976	82,050	2,310	580	3,330	88,270
p	0.930	0.026	0.007	0.037	1.00
1977	99,010	2,060	830	4,010	105,910
p	0.935	0.019	0.008	0.038	1.00

변수	$i=1$	$i=2$	$i=3$	$i=4$	Y_0
1978	134,360	3,810	1,090	5,880	144,510
p	0.930	0.022	0.008	0.040	1.00
1979	177,605	5,686	1,518	9,940	194,749
p	0.912	0.029	0.008	0.051	1.00
1980	211,043	7,810	2,026	13,207	234,086
p	0.902	0.033	0.009	0.056	1.00
1981	248,910	10,394	4,605	17,044	280,953
p	0.886	0.037	0.016	0.061	1.00
1982	284,270	8,447	6,067	18,269	317,052
p	0.897	0.026	0.019	0.058	1.00
1983	323,918	10,219	6,222	23,660	364,019
p	0.890	0.028	0.017	0.065	1.00
1984	357,603	10,362	8,611	25,722	402,297
p	0.889	0.026	0.021	0.064	1.00
1985	378,769	11,098	10,061	31,256	431,183
p	0.879	0.026	0.028	0.072	1.00
1986	419,027	14,989	12,512	34,490	481,018
p	0.871	0.031	0.026	0.072	1.00
1987	482,685	17,564	15,034	46,392	561,675
p	0.861	0.031	0.025	0.083	1.00
1988	566,833	18,331	17,769	54,282	657,215
p	0.862	0.028	0.027	0.083	1.00
1989	694,600	22,600	19,900	68,000	804,900
p	0.863	0.028	0.025	0.084	1.00
1990	809,300	25,700	24,600	83,700	943,300
p	0.858	0.027	0.026	0.089	1.00
1991	986,200	27,800	34,400	110,300	1,158,600
p	0.851	0.024	0.030	0.095	1.00
1992	1,156,600	34,700	39,100	125,700	1,356,100
p	0.852	0.026	0.029	0.093	1.00
1993	1,275,700	33,900	43,700	124,500	1,477,800
p	0.863	0.023	0.030	0.094	1.00

주: 연도에 대응되는 소득요소별 숫자는 연도별 요소별 평균소득이며 그 하단의 p에 대응되는 숫자는 그 소득의 구성비 θ_i 이다.

〈부표 3〉 연도별 요소별 절편 회귀계수 그리고 수정절편계수

연 도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와 배당	임대료	사업과 부업	수종보조	기 타
1963	300.95	-300.95	-39.28	25.78	-82.46	-111.96	-93.03
	.866	.134	.012	.012	.026	.056	.029
	.99	.97	.91	.44	.90	.95	.82
1964	646.46	-646.46	-84.40	-28.66	-67.99	-305.52	-159.89
	.79	.21	.019	.022	.029	.088	.052
	.99	.94	.84	.96	.84	.87	.96
1965	432.22	-432.22	-88.76	-11.24	-29.54	-211.65	-91.03
	.83	.17	.019	.20	.013	.067	.048
	.99	.96	.79	.82	.73	.91	.94
1966	737.77	-737.77	-243.25	-191.59	-107.09	-30.97	-164.87
	.82	.18	.034	.039	.02	.039	.048
	.98	.93	.74	.88	.91	.88	.95
1967	2350.04	-2350.04	-932.08	-60.71	-354.78	-437.46	-565.01
	.69	.31	.077	.026	.038	.073	.096
	.99	.96	.85	.92	.94	.89	.94
1968	2932.02	-2932.02	-644.74	-184.56	-439.32	-479.90	-1183.50
	.69	.31	.051	.027	.038	.081	.11
	.99	.98	.91	.92	.93	.98	.95
1969	1935.11	-1935.11	-330.19	-64.94	-19.09	-727.48	-793.41
	.77	.23	.030	.015	.016	.079	.089
	.99	.96	.91	.95	.91	.94	.97
1970	3409.90	-3409.90	-1341.95	58.26	-275.54	-533.86	-1316.81
	.74	.26	.069	.01	.023	.045	.113
	.99	.96	.82	.51	.86	.98	.99
1971	3044.43	-3044.43	-884.91	2.53	-137.99	-55.42	-1968.64
	.77	.23	.041	.011	.020	.028	.13
	.99	.96	.93	.70	.71	.81	.97
1972	4352.34	-4352.34	-768.71	75.80	-441.99	-414.92	-2802.50
	.75	.25	.036	.013	.027	.031	.143
	.99	.99	.96	.46	.92	.95	.97
1973	3579.02	-3579.02	-1360.23	-119.48	-162.36	-585.93	-1351.02
	.79	.21	.052	.018	.013	.039	.088
	.99	.99	.87	.96	.84	.98	.96
1974	3069.54	-3069.54	-1059.05	-320.76	-162.13	-360.47	-1167.13
	.84	.16	.036	.026	.011	.033	.054
	.99	.94	.80	.82	.85	.82	.97

연도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와 배당	임대료	사업과 부업	수증보조	기타
1975	4496.24	-4496.24	-1285.60	-950.06	-91.85	-889.35	-1279.38
	.85	.15	.032	.033	.01	.032	.043
	.99	.90	.81	.84	.74	.88	.94
1976	3749.63	-3749.63	-656.27	-727.58	22.04	-2230.60	-157.22
	.89	.11	.018	.022	.007	.043	.018
	.99	.82	.83	.83	.77	.65	.78
1977	10744.46	-10744.46	-922.43	-1881.39	514.05	-4804.37	-3650.32
	.86	.14	.018	.024	.004	.052	.042
	.99	.76	.89	.76	.46	.78	.54
1978	7791.14	-7791.14	-1167.24	-2074.62	128.12	-3931.77	-745.63
	.88	.12	.019	.025	.006	.049	.021
	.99	.90	.90	.77	.85	.87	.92
1979	10560.73	-10560.73	-1894.57	-1410.60	316.44	-3983.12	-3588.88
	.86	.14	.025	.022	.006	.05	.037
	.99	.90	.94	.89	.87	.81	.87
1980	19147.05	-19147.05	-2977.66	-470.82	736.24	-8523.18	-7911.63
	.82	.18	.034	.017	.005	.064	.057
	.99	.87	.94	.96	.41	.74	.79
1981	25457.27	-25457.27	-5707.89	-446.41	489.33	-9171.72	-10620.58
	.79	.21	.044	.017	.015	.063	.071
	.99	.92	.86	.80	.92	.82	.84

주: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 기타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료소득, 사업과 부업에 의해서 얻은 소득, 수증과 보조 그리고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임대료	사회보장	수증보조	기타
1982	26996.41	3246.36	-30242.77	-2661.90	-4562.11	-5847.42	-8611.98	-8559.36
	.81	.012	.178	.022	.023	.032	.051	.05
	.99	.47	.91	.92	.86	.90	.86	.73
1983	29525.22	3099.20	-32624.42	-3838.05	-2966.98	-8435.72	-6885.60	-10498.09
	.81	.01	.18	.024	.025	.041	.043	.047
	.99	.32	.89	.97	.87	.89	.82	.74
1984	26367.53	1237.08	-27604.61	-4335.14	-4304.06	-7159.18	-4065.99	-7740.24
	.82	.02	.16	.023	.026	.036	.032	.043
	.99	.65	.89	.84	.86	.86	.91	.81
1985	26458.10	-702.39	-25755.71	-3182.07	-5406.38	-8274.17	-3370.13	-5522.93
	.81	.03	.16	.018	.03	.037	.033	.042
	.99	.92	.93	.95	.87	.85	.93	.88

32 尹 起 重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임대료	사회보장	수증보조	기 타
1986	26232.87	-2706.23	-23526.64	-4161.81	-5241.68	-7961.62	-1452.07	-4709.46
	.81	.033	.157	.022	.032	.033	.026	.044
	.99	.97	.91	.91	.91	.86	.91	.90
1987	22383.26	-2168.29	-20214.97	-5094.94	-3872.39	-6114.93	-839.18	-4293.53
	.82	.031	.152	.022	.026	.029	.026	.049
	.99	.96	.88	.85	.92	.85	.87	.87
1988	18175.63	-1203.22	-16972.41	-3305.97	-4115.59	-6411.35	-858.22	-2281.28
	.83	.03	.14	.015	.025	.028	.024	.048
	.99	.92	.87	.86	.85	.76	.82	.89
1989	67387.71	-13463.95	-53923.76	-2453.28	-3525.13	-565.30	-2037.44	-45332.61
	.78	.04	.18	.014	.026	.004	.031	.105
	.99	.72	.88	.82	.87	.64	.96	.73
1990	71048.34	-7656.93	-63391.41	-6059.00	-8370.68	1162.00	-13426.76	-36652.76
	.78	.04	.18	.015	.028	.003	.04	.094
	.98	.94	.78	.78	.84	.71	.79	.71
1991	66428.20	-11259.03	-55169.17	-4504.71	-11252.99	66.08	-18274.07	-21184.51
	.79	.04	.17	.012	.027	.004	.044	.083
	.99	.94	.80	.91	.82	.72	.76	.79
1992	147.61	-21.35	-126.26	-12.50	-14.39	-5.80	-41.88	-51.69
	.748	.045	.207	.021	.026	.008	.055	.097
	.98	.97	.79	.93	.89	.58	.71	.75
1993	98.08	-21.13	-76.95	-7.93	-15.43	-3.94	-17.78	-31.87
	.801	.045	.154	.014	.024	.007	.034	.075
	.99	.97	.84	.91	.81	.87	.75	.88

주: 1. 1982년부터 분류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과 부업에 의한 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의 세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타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료소득, 사회보장수혜, 수증 및 보조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소득은 사업과 부업에 의해서 얻은 소득을 뜻한다.

2. 연도별 소득요소별에서 첫 숫자는 절편, 두 번째 숫자는 회귀계수 그리고 끝은 수정결정계수이다.

〈부표 4〉 $H_j^i = a_i + b_j y_j$

($i=1$: 근로소득, $i=2$: 재산소득, $i=3$: 사업소득, $i=4$: 이전소득 y_j : j 계층의 가구소득)

연도	계수	H_j^1	H_j^2	H_j^3	H_j^4
1963	a	300.95	-13.50	-82.46	-204.99
	b	.866	.024	.026	.084
	s	.009	.005	.003	.007
	R2	.99	.74	.90	.94
1964	a	646.46	-113.06	-67.99	-465.41
	b	.791	.042	.029	.138
	s	.020	.004	.004	.016
	R2	.99	.95	.84	.90
1965	a	432.22	-99.99	-29.54	-302.68
	b	.832	.040	.013	.115
	s	.013	.005	.003	.009
	R2	.99	.87	.73	.95
1966	a	737.77	-434.84	-107.09	-195.84
	b	.819	.073	.020	.087
	s	.019	.013	.002	.009
	R2	.98	.82	.90	.93
1967	a	2,350.04	-992.79	-354.78	-1,002.47
	b	.695	.098	.308	.169
	s	.020	.010	.003	.015
	R2	.99	.91	.94	.93
1968	a	2,932.02	-833.80	-439.32	-1,658.90
	b	.690	.078	.038	.194
	s	.015	.006	.003	.008
	R2	.99	.95	.94	.98
1969	a	1,935.11	-395.14	-19.09	-1,520.88
	b	.770	.044	.016	.17
	s	.015	.004	.0017	.012
	R2	.99	.93	.91	.96
1970	a	3,409.90	-1,283.69	275.54	-1,850.67
	b	.738	.078	.023	.160
	s	.020	.012	.004	.005
	R2	.99	.88	.86	.99

34 尹 起 重

연도	계수	$i=1$	$i=2$	$i=3$	$i=4$
1971	a	3,044.43	-882.38	-137.99	-2,024.06
	b	.771	.053	.020	.156
	s	.017	.005	.005	.008
	R^2	.99	.94	.71	.98
1972	a	4,352.34	-692.91	-441.99	-3,217.44
	b	.749	.050	.027	.174
	s	.011	.004	.003	.010
	R^2	.99	.95	.92	.98
1973	a	3579.02	-1,479.70	-162.36	-1,936.96
	b	.790	.070	.013	.127
	s	.009	.007	.002	.008
	R^2	.99	.93	.84	.97
1974	a	3,069.54	-1,379.81	-162.13	-1,527.60
	b	.840	.061	.011	.088
	s	.015	.0076	.0016	.007
	R^2	.99	.89	.86	.95
1975	a	4,496.24	-2,235.66	-91.85	-2,168.73
	b	.846	.070	.010	.074
	s	.016	.0098	.0017	.007
	R^2	.99	.83	.74	.92
1976	a	3,749.63	-1,383.85	22.04	-2,387.82
	b	.894	.040	.007	.059
	s	.013	.004	.001	.009
	R^2	.99	.86	.77	.73
1977	a	10,744.46	-2,803.81	514.05	-8,454.70
	b	.859	.041	.004	.096
	s	.02	.0046	.001	.015
	R^2	.99	.84	.45	.69
1978	a	7,791.14	-3,241.86	128.12	-4,678.00
	b	.875	.044	.006	.075
	s	.011	.0046	.0007	.0065
	R^2	.99	.86	.85	.90
1979	a	10,560.73	-3,305.17	316.44	-7,572.00
	b	.856	.047	.006	.091
	s	.013	.003	.001	.010
	R^2	.99	.94	.87	.85

연도	계수	$i-1$	$i-2$	$i-3$	$i-4$
1980	a	19,147.05	-3,448.47	736.24	-16,434.82
	b	.823	.051	.005	.121
	s	.018	.0028	.001	.017
	R^2	.99	.96	.41	.77
1981	a	25,457.27	-6,154.30	489.33	-19,792.30
	b	.790	.061	.015	.134
	s	.016	.005	.001	.015
	R^2	.99	.91	.91	.84
1982	a	26,996.41	-7,125.09	3,246.36	-23,117.68
	b	.814	.049	.012	.125
	s	.0115	.002	.003	.012
	R^2	.99	.97	.46	.87
1983	a	29,526.22	-6,805.03	3,099.20	-25,820.39
	b	.809	.049	.010	.132
	s	.014	.003	.004	.016
	R^2	.99	.94	.33	.82
1984	a	26,367.53	-8,639.20	1,237.08	-18,965.41
	b	.819	.049	.020	.112
	s	.011	.004	.004	.011
	R^2	.99	.92	.65	.87
1985	a	26,458.10	-8,587.45	-703.45	-17,167.20
	b	.812	.048	.026	.114
	s	.011	.004	.002	.010
	R^2	.99	.92	.91	.90
1986	a	26,232.87	-9,403.49	-2,706.23	-14,123.15
	b	.810	.053	.033	.104
	s	.014	.004	.0015	.010
	R^2	.99	.92	.97	.89
1987	a	22,383.26	-8,967.33	-2,168.29	-11,247.64
	b	.816	.049	.031	.104
	s	.015	.004	.002	.010
	R^2	.99	.90	.96	.87
1988	a	18,175.63	-7,421.56	-1,203.22	-9,550.85
	b	.833	.040	.031	.096
	s	.014	.004	.002	.010
	R^2	.99	.86	.92	.86

연 도	계 수	$i=1$	$i=2$	$i=3$	$i=4$
1989	a	67,387.71	-5,978.42	-13,463.95	-47,945.3
	b	.785	.040	.039	.136
	s	.022	.003	.006	.017
	R^2	.99	.93	.72	.80
1990	a	71,048.34	-14,429.68	-7,656.93	-48,961.7
	b	.783	.044	.035	.138
	s	.027	.005	.002	.021
	R^2	.98	.83	.94	.76
1991	a	66,428.20	-15,757.70	-11,259.03	-39,411.47
	b	.790	.039	.040	.131
	s	.024	.004	.003	.018
	R^2	.98	.86	.94	.79
1992	a	147.61	-25.85	-21.35	-100.41
	b	.748	.045	.045	.162
	s	.030	.003	.002	.025
	R^2	.98	.91	.97	.74
1993	a	98.08	-23.29	-21.13	-48.66
	b	.801	.039	.045	.115
	s	.018	.004	.002	.013
	R^2	.99	.87	.97	.84

* 연도별 a 에 대응되는 숫자는 절편, b 는 회귀계수, s 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이며, R^2 는 수정 R 제곱을 가리킨다.

〈부표 5〉 경제지표

연 도	WPI 등귀율	CPI 등귀율	경제성장률
1963	20.6	20.7	8.8
1964	34.6	29.7	8.6
1965	10.0	13.4	6.1
1966	8.9	12.0	12.4
1967	6.4	10.9	7.8
1968	8.1	11.2	12.6
1969	6.8	10.1	15.0
1970	9.1	12.7	7.9
1971	8.6	12.3	9.2
1972	14.0	10.6	7.0
1973	6.9	3.0	16.5
1974	44.6	24.3	8.6
1975	19.6	25.3	8.3
1976	9.4	8.7	15.3
1977	8.8	9.8	9.8
1978	9.7	14.4	9.8
1979	23.0	18.3	7.2
1980	40.9	28.7	-3.7
1981	10.3	21.5	5.9
1982	4.7	7.1	7.2
1983	.1	3.4	12.6
1984	.8	2.3	9.3
1985	.9	2.4	7.0
1986	-1.4	2.7	12.9
1987	.4	3.0	13.0
1988	2.7	7.1	12.4
1989	1.5	5.7	6.8
1990	4.2	8.6	9.3
1991	4.7	9.3	8.4
1992	2.2	6.2	4.7
1993	1.5	4.8	5.6p

주: 1. p표시가 되어 있는 1993년의 GNP 성장률은 잠정 추정치에 의한 것이다.

2. WPI와 CPI의 등귀율은 각년의 1월대비 12월의 등귀율을 의미한다.

3. CPI는 서울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한다.